

14 해양 생태계 보전-14.1. 해양쓰레기 분야

1. 목표

1) 목표의 필요성과 의의

- 적절함

2) 현황과 쟁점

-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인식증진 등 활동을 진행 중
- 해양수산부의 '국가해안쓰레기모니터링'의 현장조사를 지역 민간단체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국제연안정화' 행사 등 학생 및 시민 대상 해양쓰레기 교육 홍보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음.
- 특히, 국내 단체((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가 '아시아태평양 해양쓰레기 시민포럼'의 사무국을 맡아서 NGO의 대응 역량 강화를 이끌고 있음.

2. 세부목표

1) 세부목표(안)에 대한 입장

- 세부목표는 오염물질별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수정, 보완, 추가해야 할 세부목표 제안

- 육상과 해상에서 비롯된 해양쓰레기로부터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관리체계 확립
- 육상에서 비롯된 영양염류로부터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관리체계 확립

3. 지표

1) 지표(안)에 대한 입장

- 1.a, 1.c의 지표는 향후 기술개발을 통해 확보하여야 가능한 방법으로서 현재 가용한 지표의 활용이 필요함.
- 현재의 지표는 해양쓰레기의 유입량(annual input, quantity per year)만을 포함하고 있음. 해양쓰레기의 피해에 관한 지표 또한 필요함.

2) 수정, 보완, 추가해야 할 지표 제안

- 14-1a. 해안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
 - '국가해안쓰레기 모니터링'이 11년째 진행 중임. 현재 전국 40개 정점에서 2개월마다 새로 해안으로 들어오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개, kg/100m/2개월)을 파악하고 있음. 연도에 따른 증감을 파악할 수 있음.
 - 플라스틱 쓰레기 중 육상기인(음료병/병뚜껑, 비닐봉지, 일회용 컵, 등)과 해상기인(플라스틱 부표, 스티로폼 부표, 폐어망 등) 쓰레기의 양(개/100m/2개월)을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음.
- 14-1b. 시각평가를 통한 해안쓰레기의 현존량
 - 해안쓰레기의 현존량을 육지부 자연해안 382개 고정 정점에서 평가하고 있음(2016년~). 해안쓰레기의 부피(리터/100m)를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음.
 - 14-1a와 함께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여 해안쓰레기의 연도에 따른 증감을 파악할 수 있음.
- 14-1c. 부유 폐어구로 인한 선박 운항 장애 건수(특히 해군함정의 운항 장애 건수)
 - 해양쓰레기의 피해는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매우 어려우나 우리나라는 해군함정이 폐어구에 걸려 운항 장애를 입은 건수가 지난 6년간 축적되어 있음(Hong et al., 2017). 이는 모든 함정에 대한 전수조사 수치로서 폐어구로 인한 안전 및 경제적 피해를 나타내는 적절한 지표임.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평균	표준편차
업힘 건수/년	465	403	351	393	391	383	2,386	397.7	37.5
폐어구 제거량 (톤)/년	9.89	8.69	8.86	8.94	10.66	13.08	60.12	10.02	1.68

- 14-1d. 육상과 해상 기인 쓰레기의 해양 유입 감소 비율
 - 육상기인과 해상기인 쓰레기의 해양 유입량 측정 및 평가 기법 개발 및 통계 체계 구축 추진 필요
- 14-1e. 해안•부유•침적 쓰레기의 현존량
 - 해안•부유•침적 쓰레기의 현존량 측정 및 평가 기법 개발 및 통계 체계 구축 추진 필요
 - 해안쓰레기 현존량의 경우, 현재는 훈련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해안 정점을 방문하여 현존량을 시각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만 적용 중. 도서 지역 등 직접 방문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측정 기법 개발 필요
- 14-1f. 산업 분야별, 피해 유형별 해양쓰레기 영향
 - 산업분야별, 피해 유형별 영향 평가 기법 개발 및 지속적 현황 조사, 피해 규모 정량화 기법 적용 필요

4. 목표별 연계와 거버넌스 구축 방안

- SDG 12.(생산과 소비) 중 특히 12.1(자원 효율화), 12.5(재활용) 등과 관련 해양쓰레기 통합관리 법적 근거 마련, 범부처 협의회 설치, '하천 유역 쓰레기 총량 관리제' 도입 등 필요

14 해양생태계 보전

1. 목표

- 해양보호구역 지정 비율 산정에 있어 주변국가와 배타적 경제수역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면적 기준 통계 설정에 비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함. 그러다보니 각 정부 부처별, 연구기관별, 민간단체별 해양보호구역 지정 비율에 대해 각기 다른 수치를 사용하면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에 따른 비공식적 자료를 사용하는 등 관련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합의를 통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비율 등에 대한 정리가 필요함.
- 해양보호구역은 양적 확대와 질적 관리 두 측면이 모두 달성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습지보전법이 제정된 1999년 이후 약 20년 동안 양적 확대는 물론 질적 관리를 위해 다양한 법률과 정책을 발전시켜 왔음. 하지만 여전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해양생태계 지역이 주민들과 지자체의 반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이번 K-SDG 수립에 있어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를 우선적 목표로 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양적 확대 안에는 질적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2) 현황과 쟁점

2. 세부목표

1) 세부목표(안)에 대한 입장

- 14.3 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 확대 세부목표와 세부목표에 대한 포괄성 검토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함

2) 수정, 보완, 추가해야 할 세부목표 제안

- 현재 <목표와의 부합성>에 의하면 SDG 목표 14.5에 따른 “최소 10%의 연안과 해양의 최소 10%를 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최소 연안 10%, 해양 10%를 합하여 관할해역 최소 2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의미로 잘못 해석될 수 있음.
 - 국내 해양보호구역의 경우에도 연안생태계는 갯벌을 중심으로한 습지보호지역으로 보호지역 제도가 일부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연안과 해양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해양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세부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제안 세부목표 : 최소 연안 및 해양지역 10% 보전
- 세부목표에 대한 포괄성 검토 부분 일부 수정 필요함.
 - 현재 “해양의 일정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정하여 이용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으로 서술되어 있음
 - 하지만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무분별한 이용을 제한하고 주민들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어업 등은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해양보호구역 안에서 일체의 이용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이용 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현실을 반영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지표

1) 지표(안)에 대한 입장

- 해양보호구역 산정방식과 출처에 있어 해양보호구역 범위에 포함시킬 보호지역에 대한 정의와 합의가 국내에서 선행되어야 함

2) 수정, 보완, 추가해야 할 지표 제안

- ‘해양보호구역’의 의미가 해양에 지정되어 있는 보호구역을 의미한다면, 국내 보호지역 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문화재청이 관할하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명승, 천연기념물 등도 해양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또한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한 환경보전해역도 있음. 물론 다른 보호지역과 중

복지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정의 재정립과 제도적 범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함

4. 목표별 연계와 거버넌스 구축 방안

- 14.3 해양보호구역 지표를 SDG 14.4와 연계하여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수산자원의 Spill-over 효과가 증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SDG 14.7과 연계하여 해양보호구역을 수산업, 양식업, 지속가능한 관광의 모델지역으로 만들고 이를 비해양보호구역으로 확산시켜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는 선순환체계 확립 필요. 이는 14.b 소규모 영세업자들을 지원하는 방안 중 하나이기도 함
- 물고기가 물과 분리되어 살 수 없듯이 해양수산부 내에서 해양보호구역 담당 부서와 수산 및 관광분야 담당부서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내 협의회 설치 필요

7 에너지 기후변화

| 목표명에 대한 수정 보완

1. 7 에너지에 대해서는 동의함

2. 13 기후행동에 대해서는

- ; (안 1) 13.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대응과 복원 능력을 강화한다.
에 동의함

II 작업반 세부목표[안]에 대한 입장 [수정.보완 의견]

1. 세부목표

세부목표중에 송준일이 특별한 입장을 보이는 것들만 아래에 발췌 언급합니다

1-1 에너지 관련

2030년까지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현대적인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 (송준일 입장) 위 문장이, UN지속가능개발목표에서 기술된 문장과 비교해 보면, 모호한 부분이 많다. UN지속가능개발목표 문장을 그대로 가지고 오자
송준일 안 ; 2030년까지 적당한 가격으로, 신뢰할 수 있으며, 현대적인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2030년까지 파리협약을 이행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청정에너지 연구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청정에너지 기반시설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증진한다.

- (송준일 입장) 우리나라 의 연구개발 투자비가,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수준도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포함시키는 것은, 산업계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자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세금내는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이 세부목표들 전체가 외면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에, 국제협력 강화 문장은, 국제협력을 다루는 분과에게 위임하고, 우리 분과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송준일 안 ; 2030년까지 파리협약을 이행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청정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청정에너지 기반시설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증진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보다 청정한 화석연료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에 선진국, 개도국, 최빈국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위 기술에 대한 기반시설 및 기술투자를 강화한다.

- (송준일 입장)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비가,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수준도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포함시키는 것은, 산업계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자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세금내는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이 세부목표들 전체가 외면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에, 선진국 개도국 최빈국과의 국제협력 강화 문장은, 국제협력을 다루는 분과에게 위임하고, 우리 분과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송준일 안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보다 청정한 화석연료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위 기술에 대한 기반시설 및 기술투자를 강화한다.

2030년까지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 등이 적절한 가격에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공급하고 기술을 개선한다.

- (송준일 입장) 우리나라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도, 일반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에게 기반시설을 공급하게 하라는 것은, 우리나라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자들이 하는 주장이라고, 세금내는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이 세부목표들 전체가 외면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에,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 문제는, 국제협력을 다루는 분과에게 위임하고, 우리 분과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송준일 안 ; 2030년까지 에너지 빈곤층이 적절한 가격에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공급하고 기술을 개선한다.

2030년까지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 등이 전 인류가 타당한 가격에 보편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공급하고 기술을 개선한다.

- (송준일 입장) 바로 앞의 세부목표와 문장이 거의 같다. 아마도 같은 내용을 두 번 적은 것 같다. 삭제해야 한다.

1-2 기후행동 관련

13.1 국내 모든 곳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해 예상되는 자연재해에 대해 위험수준 (critical level)을 이상으로 회복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 (송준일 의견) 문장에서 주어와 조사가 잘 못 사용되고 있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문장인지 모르겠으니,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바꾸자
혹시 이런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
- 기후변화에 의하여, 향후 다양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국내의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 이 자연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신설하거나, 기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보강하자

혹시 이렇게 바꾸면 의미의 차이가 많이 바뀌는지 ?

- > 급격한 기후변화에 기인하여, 향후 다양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지역에, 이 재해를 대비하는 시설물을 신설하거나,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를 보강하자

13.2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를 국가 및 지방 정책, 전략, 계획에 통합한다.

- (송준일 의견) 문장에서 주어와 조사가 잘 못 사용되고 있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문장인지 모르겠으니,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바꾸자
혹시 이런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조치를 하자..

이 조치는 국가 정책과, 국가 전략, 국가 계획에 들어가야 한다.

이 조치는 지방 정책과, 지방 전략, 지방 계획에 들어가야 한다.

-> 여기서, 국가 정책과, 국가 전략, 국가 계획과

지방 정책과, 지방 전략, 지방 계획이란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지 ?

이들 용어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

이들 용어를 합칠수는 없는지 ?

혹시 이렇게 바꾸면 의미의 차이가 많이 바뀌는지 ?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13.3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 등에 관한 교육, 인식제고, 인적
· 제도적 역량을 강화한다.

• (송준일 의견) 문장에서 조사가 잘 못 사용되고 있어, 어색하게 읽힌다.

혹시 이렇게 바꾸면 의미의 차이가 많이 바뀌는지 ?

-> 13.3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 등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인식을 제고하고, 인적·제도적 역량을 강화한다.

III 작업반 지표[안]에 대한 입장

1. 에너지 지표 관련

세부목표 ; “2030년까지 전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완료한다”

지표 추가 ; 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구축율

세부목표 “2030년까지 에너지빈곤층의 비율을 상당한 수준으로 줄인다”라는 목표와 관련하여서는,

-> “에너지빈곤층의 비율”이라는 지표를 채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지표 ; “우리나라의 ODA 지출 중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전력송배전 사업 지출 금액과 비중” 에서

- (송준일 의견) ODA는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용어이다. 에너지 분과에서 개도국 지원 지표를 채택하는 것 보다는, 다른 개도국 지원 관련된 분과에서 다루는 것이 좋겠다 -> 삭제하자

세부목표 “2030년까지 파리협약을 이행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청정에너지 연구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청정에너지 기반시설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증진한다.”라는 (송준일이기 일부 수정한) 목표와 관련하여서는,

지표 ; “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청정석탄화력기술 부문 연구 국제협력 예산의 전체 에너지부문 국제협력 비중”이라는 지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면 좋겠다

-> “청정에너지 공급률”

K-SDGs 수립에 대한 과학기술그룹의 제언

1. (정부정책과 연계) 과학기술과 정책실행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K-SDGs의 주요 이슈가 정부정책에 반영되어야 함.

- 예를 들어,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에는 기후변화와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기술의 고도화를 언급하고 있음. 이는 SDG7, 13번과 연계할 수 있음.
- 과학기술분야의 최상위 기본계획인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 및 부처의 과학기술육성 기본계획에 K-SDGs 목표·세부목표·지표가 반영되면, 해당 목표에 국가 R&D 예산이 비교적 쉽게 투입되는 효과를 발생.
- 앞으로 이루어지는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미리 해당부처와 협의하여야 함
 - K-SDGs와 국가R&D 정책과의 연계성에 대한 실태를 검토하고, K-SDGs의 목표별 우선순위를 정해 연계하는 작업을 진행한다면, K-SDGs목표 달성이 보다 용이해질 것임.

2. (국가 R&D 예산과의 연계) 정부정책에 포함되더라도, 실질적 R&D 예산확보가 이루어져야, K-SDGs 수립 목표, 세부목표, 지표에 대한 과학기술적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짐.

- 부처별 R&D 중기재정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되도록 주무부처가 노력해야 함.

3. (연구기관의 기관평가와 연계) K-SDGs의 목표와 세부목표에 따른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하는 과정과 기관평가를 연계함으로써 이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 예를들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출연 연구기관 임무중심형 기관평가 지침(2017.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라 기관평가를 받고 있음.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축적하는 연구 데이터가 신뢰성있게 국가사회문제 해결에

제공되기 위해 기관평가와 연계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

- 대학, 국공립연구소 역시 기관 평가와의 연계방안을 검토하고, 제도 보완
- 과학기술계의 사회적 책임은 올바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국가사회에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방향에서 기관평가와 연계

4. **(북한과의 협력을 위한 전략도구로 활용)** UN SDG1(빈곤퇴치), SDG2(기아종식 및 지속가능한 농업), SDG3(건강 및 웰빙) SDG6(깨끗한 물과 위생) 분야는 인도적 차원에서 통일 준비 협력분야로 가까운 미래에 부상할 것임. K-SDGs를 통일 준비를 위한 국가의 전략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함. 정부, 작업반, 연구기관, 시민사회 등이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함.

- 예를들어, 북한의 식량증산 문제는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지속적으로 북한이 필요로 하는 분야이며, 그 외에도 에너지(전력), 산림, 의약품, 미세 먼지 분야는 북한의 필요가 존재하므로 우리와 협력이 가능.
- 북한과의 협력에 국제사회의 목표를 활용하는 것이 협력에 대한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함.

5.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와의 연계)** 그간의 경제·사회·환경변화와 과학기술수준 향상을 고려해,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와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6. **(K-SDGs 포럼 국회 개최)** K-SDGs 관련 학술포럼을 국회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한다면, 국회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임.

7.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대통령직속으로 격상되면, K-SDGs 추진이 보다 용이해질 것임.

14 해양생태계 보전- 검토의견

1. 목표

- 목표설정에 수정이 필요 한 것으로 보임
 - 국제적 방향은 '인간활동으로 인한 오염방지 및 저감', '어업활동의 적절한 규제', '생태계 기반 관리를 통한 전체 해양생태계 복원' 라는 일정한 흐름 하에 기술되어 있음
 - 그러나 현재 목표는 모든 정책과 실행의 목적이 수산자원의 증대에 있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음.
 - K-SDG's의 목표는 해양 관련자들만의 것이 아니며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보다 보편적이고 대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서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2. 세부목표

1) 세부목표(안)에 대한 입장

- 현재의 세부목표들은 적절 한 것으로 여겨짐

2) 수정, 보완, 추가해야 할 세부목표 제안

- 해양생태계보전을 위해 가장 근본적인 처방인 '생태계 기반 관리를 통한 전체 해양생태계 복원'을 지원할 세부목표가 추가 될 필요 있음, 단지 '보호지역 면적의 확대'만으로는 부족 함
 -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해 통합관리 및 생태계서비스 개념 도입 및 실행
- 해양의 월경성과 유역관리가 필수 일 수 밖에 없는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간(특히 한·중·일), 육상생태계, 물과 위생,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분야와의 협력 구조가 실제적으로 아주 중요 함
 - 국가간, 타 분야간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해역 중심의,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연안유역관리 거버넌스의 구축

- 해양의 특성상 대부분 국가의 업무가 많아 국민들에게 체감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중적인 수준의 세부목표를 전략적으로 배치 할 필요가 있음
 - 육상기인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전국민 참여 프로젝트 마련

3. 지표

1) 지표(안)에 대한 입장

- WQI의 경우 종합평가의 틀로, 지수 내에서 상호 상쇄효과가 일어나 개선점을 찾기 위한 세부적인 변화와 문제점을 찾는 것에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보조지표가 마련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해양보호구역 면적’과 함께 ‘단위 해양보호구역 면적 당 관리인원 및 관리비용 투입량’ 지표를 추가
 - 면적증가와 함께 실효적인 효과가 내려면 적극적인 자원투여가 필요 함
 - 육상 생태계 분야와 연계 시 해양의 접근성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해양에 가산점 부여 방식도 도입

2) 수정, 보완, 추가해야 할 지표 제안

- 해양보전 및 육상기인 오염방지 활동에 참여한 국민의 수(인원×횟수)
- 해양생태계 보전관련 거버넌스의 수와 협력의 횟수(거버넌스 운영, 현장에서의 실천적 협력사례 포함)
- UN SDGs의 14.2.1 (생태계 기반의 접근방식으로 관리되는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비율) 추가
 - 국가의 미래를 위한 계획인 만큼 현재 어렵더라도 K-SDGs 작성을 계기로 근본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